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과

의안 제635호로 2025년 11월 7일 우경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 제출
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11.7.~11.13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2조에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종합의견

-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 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며,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¹⁾에 의거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.
- 또한 행정안전부의 “2024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평가지표”²⁾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 포상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,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「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」³⁾에서도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됨.

1)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 4)에 의거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시상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집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.

[별첨] 행정안전부 2024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평가지표⁵⁾

○ 정량평가, 책임성(6개 항목, 15점)

목표	평가지표		배점
책임성 (15점)	분야 : 주민참여		8
	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	(1-1)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2, 이외는 0	2
	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	(1-2)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 투표 공청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 3, 이외는 0	3
	주민의견서 구성	(1-3)①공모금액, ②주민제안 방법, ③주민제안 내역, ④사업 우선순위 설정방법, ⑤선정결과 중 기재 항목 수가 2개 이하 1, 3개 2, 4개 이상 3	3
	분야 : 참여지원		7
	제안사업의 구체화	(1-4)제안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면 2, 이외는 0	2
	제안사업의 추진 결과 환류	(1-5)결산 및 평가를 마친 사업의 보완 등 환류 방안이 있으면 2, 이외는 0	2
	포상 및 인센티브	(1-6)주민참여예산 관련 포상이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3, 이외는 0	3

3) 출처: 「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」(행정안전부, 2024.6.)
포상이나 인센티브 등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함

4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 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(考案)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,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

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
-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"예산과정"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 2.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